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31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이용시 세액공제 신설(김예지의원안) · | 3 |



## I. 개요

###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7731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3. 25.
- (3) 회 부 일 : 2026. 3. 26..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하여 주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임차비,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는바, 이는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을 조세 측면에서 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한편,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 평균 17만원 수준으로, 의료비·보장구 구입비·교통비 등 일상적 지출에 소요되고 있음. 특히, 근로 장애인의 경우 이동 지원, 보장구 유지·관리, 활동지원인·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이용 등 경제활동 수행을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와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만을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세제상 별도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조세정책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이용시 세액공제 신설(김예지의원안)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br><br><input type="checkbox"/> <신 설> | <input type="checkbox"/>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이용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제59조의4제5항 신설)<br><br><input type="checkbox"/> <u>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및 제21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u><br><br><input type="checkbox"/> 시행일: 2027. 1. 1.<br><br><input type="checkbox"/>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 김예지의원안 2026. 3. 25. 발의(의안번호 17731)

☐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특정 비용에 대하여 그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현행법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임.

□ 근로지원인 서비스<sup>1)</sup>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보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업무지원인 서비스<sup>2)</sup>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이 이러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본인부담금 중 1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서비스 신청을 독려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음.

-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근로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의 제공
-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업무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하여 이미 이용료의 대부분이 정부예산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정부예산으로 대부분의 이용료가 지원되는 사회서비스임.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경우 이용료 중 본인분담금이 1시간에 80원~300원<sup>3)</sup> 수준이며, 업무지원인 서비스<sup>4)5)</sup>의 경우 이용료 중 본인분담금은 공급가액의 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료의 대부분이 정부예산으로 이미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 중복지원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예산정책처는 김예지의원안에 따라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이용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경우 소득세 수입은 2028년 4억 7,700만원 등 2028년~2032년까지 5년간 총 25억 7,000만원(연평균 5억 1,4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3)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

4)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23년 마련되었으나, 2026년부터 동 서비스가 정식실시되어 평균 공급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는 도출되지 않은 상황임

5) 2026년 중소기업부 소관 예산에 관련 내역이 최초로 편성되었으며, 총 115개사에 1,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30년)]

(단위: 백만원)

|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누적     | 연평균  |
|--------|------|------|------|------|------|--------|------|
| 김예지의원안 | △477 | △495 | △513 | △533 | △552 | △2,570 | △514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57